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장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428

발의연월일: 2025. 3. 28.

발 의 자:김장겸·엄태영·조경태

조승환・최수진・김 건

김소희 • 박덕흠 • 박준태

김재섭 · 서일준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, 홍보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 고 있으며, 부동산업 등 32개 업종은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에서 제외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산업 간 융·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어,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다양한 신산업 육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 한편,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(2018년 개정) 및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(2020년 개정)은 제외 업종에서 금융업・부동산업 등을 삭제하고, 유흥・향락・사행산업 등을 제외한 모든업종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음.

이에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에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

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제외하고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을 폭넓게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호).

법률 제 호

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 중 "자(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)를"을 "자를"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1인 창조기업"이란 창의성	1
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	
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	
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	
는 자(부동산업 등 대통령령	<u>자를</u> <u>다만, 사행</u>
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	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
<u>자는 제외한다)를</u> 말한다.	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
<단서 신설>	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
	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
	<u>다.</u>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